

## &lt;MDMB-INACA&gt;

# 식약처, '엠디엠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 관리 강화
-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임시마약류(2군)로 7월 11일 지정 예고했습니다.

\* 신종 합성대마 계열로 오·남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 시도된 물질

'엠디엠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응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2023.6.15. 기준)

-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1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89종)
- √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6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담당 부서 <총괄>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주 (043-719-2808)
		담당자	사무관	송현숙 (043-719-2804)
담당 부서 <약리>	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약리연구과	책임자	과 장	최선옥 (043-719-5201)
		담당자	연구관	권찬혁 (043-719-5208)



**<지정사유 내용>**

-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 마. 해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b>MDMB-INACA</b>	Methyl (2S)-2-(1H-indazole-3-carboxylamino)-3,3-dimethylbutanoate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정보없음 (다만, 유사구조인 임시마약류 MDMB-5Br-INACA는 합성 칸나비노이드로 분류되며 Δ9-THC와 유사한 향정신성 효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국내 반입 시도(인천공항세관, '23.6)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2군